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18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귀중

2014년 3월 13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수지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 재무제표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은 현금주의에 따른 단식부기회계이므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별도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에서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그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수지계산서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2013년 회계년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401호

이 산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조 해 종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